

소속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알림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인한 사고 예방과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속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국가공무원법제9조2항 관련)

점심시간에 용무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휴무 시행 우체국인지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의 협조와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행시기	대상 우체국	비고
'23. 1.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이문동우체국 (점심시간 12:00~13:00)○ 서울제기동우체국 (점심시간 12:00~13:00)	

동 대 문 우 체 국 장

- ◇ 국가공무원법 제9조(근무시간 등) 2항 :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